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959
----------	--------

제안년월일 : 2016년 2월 2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와 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을 공동 선임하는 것과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준하여 임원 인건비 및 수입·지출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고, 버스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나.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 다. 시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중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동 선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를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상태에 따라”를 “경영상태 등에 따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④ (생략)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동 선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③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p>운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양별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p> <p>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u>제5조 및 제6조의 사항</u>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p>	<p>④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제외)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u>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u>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제외)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시의회 보고)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시장의 책무)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p>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신설〉</p>	<p>⑤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p>	<p>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p>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준하여 임원의 인건비, 수입·지출 현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신 설></p>		<p><삭 제></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양벌규정”을 “지원제외”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 및 제6조의 사항에”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로 한다.

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u>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u>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생략)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제7조(양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7조(<u>지원제외</u>) (현행과 같음)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u>제5조 및 제6조의 사항에</u>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u>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u>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제9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u>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u>

현행	개정안
	<p>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